

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교내 선거 운동 및 학생 선거교육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교내 선거운동 범위

운용기준, 선관위 유권해석, 시도교육청 협의* 등에 따라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관리자(학교의 장)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학생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 협의회('20.1.20., '20.2.6., '20.2.19., '22.2.11.)

-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 안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관련 근거 —

- 「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영·관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학생 및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공직선거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학교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 그 외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관련 **학생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는 별첨된 ‘사례 안내’ 참조

관련 근거

-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1.25.)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은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유의

* (예시)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① 학생의 선거운동이 수업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② 학생의 선거운동이 다른 학생의 휴식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이 강요되는 경우
 - ③ 학교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
- ☞ 세부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22.상)

관련 근거

-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1.25.)
-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통제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바(2020.2.18.회신),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할 것임

□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 교원은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치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도 동일한 복무규정이 적용됨을 유의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 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또한 교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유의

— 관련 근거 —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생략)
 5. 제53조(공무원 등의 立候補)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선거교육 자료**

-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참고] 선거연수원 개발 자료 및 탑재위치

자료명	대상	자료 유형	배포시기	탑재위치
교원에게 필요한 선거교육 가이드	교원용	책자	'21.9.	선거연수원 누리집 (www.civicedu.go.kr) > 통합자료실 > 민주시민교육자료 >
양대 선거대비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교원용/ 학생용	E-book 오디오북(청소년용) PPT 포함	'21.9.	

자료명	대상	자료 유형	배포시기	탑재위치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리플릿	학생용	E-book (모바일용 포함)	'21.9.	청소년선거교육
양대 선거대비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1,2,3)	학생용	동영상	'21.9.	
양대 선거대비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1,2,3)	학생용	유튜브	'21.9.	선거연수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4xlgzjvU3uCVcpvNHY-d-Q)
'22년 양대 선거 대비 선거교육 카드뉴스	학생용	동영상	'21.12	선거연수원 누리집 (www.civicedu.go.kr) > 통합자료실 > 민주시민교육자료 > 청소년선거교육
제20대 대통령 선거교육 카드뉴스(알쏭달쏭 선거퀴즈(6종))	학생용	동영상	'22.1~2.	
[’22.1.21. 정당법 개정사항 반영] 양대 선거 대비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자료	학생용 교사용	책자, E-book, 오디오북	'22.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교육 슷폼 영상(15종)	교사용 학생용	동영상	'22.2.	
[가상공간 체험] 선거랜드(게더타운)	학생용	메타버스	'22.2.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교원 연수 영상	교사용	동영상	'22.2.28	



▲ 교원에게 필요한 선거교육 가이드



<교원용>



<학생용>



<선거랜드(게더타운)>

▲ 양대 선거대비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자료

※ 18세 유권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누리집(<https://nec.go.kr/site/vt/main.do#>)
- [선거정보] -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실]

□ 학교 안 정치관계법 적용 사례

- 학교 안 선거운동 등 정치관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례에 대해 다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운용기준) 학생유권자/피선거권자/정당원과 관련된 사례에서 정치관계법 적용 기본 원칙 등
- (사례안내) 운용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질의답변 형식으로 구성

※ [참고] 자료명 및 주요내용

영역	배포시기	자료명
운용기준	'20.2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22.2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사례안내	'22.2	학생 등의 선거운동·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사례 안내

- 그 외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및 상담센터^{**}를 활용

* [정보공간] - [선거법규] - [서면/인터넷 질의보기]에서 기존 질의 확인 및 [참여마당] - [선관위 신문고] - [정치관계법 질의]를 통해 질의 가능

** 국번 없이 1390(유료) 또는 ' 시도교육청-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핫라인 활용

참고1

학생유권자 교육용 동영상 목록



18세 유권자 대상 선거법 안내영상 등 콘텐츠



한국선거방송(eTV) 채널안내

- KT올레티비 273번, LGU+tv 256번, Btv케이블 205번, KCTV제주방송 354번
-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necpr)

18세 유권자 종합선거세트(3종)(2021.12.)

콘텐츠명	내용	
<p>1. 투표, 얼마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전문 유튜버가 설명해주는 투표의 경제적 가치와 한표의 중요성 ■ 편수/분량 : 1편 / 15분 ■ 출연자 : 유튜버 신사임당, 아나운서 김선신 ■ url : https://youtu.be/sZEn_Bm_GNA 	
<p>2. 나의100번째 첫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유권자를 위한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과 투표에 관한 학원물 - 학교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사례 등 재연 ■ 편수/분량 : 5편 / 각10~15분 ■ 출연자 : 배우 송진우, 모모랜드 나윤, 블랙비 비범 등 ■ url : https://youtu.be/7JU6y2yHmc 	
<p>3. 우아한 투표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유권자, 미래 유권자, 외국인이 모인 걸그룹 woolah!와 함께 풀어보는 선거법 관련 ox퀴즈 ■ 편수/분량 : 1편 / 15분 ■ 출연자 : Wool!Ah!(나나, 우연, 민서, 소라, 루시) ■ url : https://youtu.be/0s5a2hS6gLM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1. (사전)투표소 가기전 신분증 준비하기
2. 어린자녀 등은 가급적(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3. (사전)투표소 가기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4.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5.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하기
6.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7.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8.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9.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투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하기
10.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